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51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강득구·최혜영·김병욱

정일영 • 민병덕 • 김민철

양기대 · 김철민 · 정춘숙

민형배 • 도종환 • 최강욱

서영석 · 김의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학생생활지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교사 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09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096호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09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생 략)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		
	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		
	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		
	<u> </u>		